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8
----------	-----

제출연월일 : 2011. .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2011.06.27)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 의무예치비율 조정 및 기금의 용도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를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립액 의무예치비율 조정(조례안 제3조)

▷ 법정적립액 : 기존 30% → 개정 15%

나. 기금의 용도 조항 변경(조례안 제7조)

▷ 기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1항 및 시행규칙 제20조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다.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용자 관련 단순 변경된 조항 반영(조례안 제8조)

▷ 기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1항제6호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1호마항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등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관계부서협의 :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 : 2011.09.16~ 2011.10.06(20일간) 실시, 제출된 의견없음

마.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의하여”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제2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3조 중 “군수”를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으로,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이상”으로, “당해연도사용 기금액”을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으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지방재정법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과 「은행법」 제5조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

제5조의 제목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를 “(당해년도 사용기금액

의 운용·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을 “당해년도 사용기 금액”으로, “기금결산후”를 “기금결산 후”로 한다.

제6조 중 “의한”을 “따라”로, “익년”을 각각 “다음 연”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 각 호에서 규정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영 제74조제1항제6호의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74조제1호마목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를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로, “70%”를 “70퍼센트”로, “3천만원이하”를 “3천만원 이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그밖에”를 “그 밖”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기금의회계관리)”를 “(기금의 회계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항에 대하여는 평창군재무회계규칙”을 “사항은 「평창군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2항의 규정”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로, “대장을”을 “장부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다음연도”를 “다음 연도”로, “연2회”를 “연 2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과반수이상”을 “과반수”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를 “「지방자치

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로, “출납폐쇄후 80일 이내”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를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u>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u>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u>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u>」 제67조에 따라 ----- <u>재난관리기금</u>----- ----- -----.</p>
<p>제2조(기금의 조성) <u>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u></p> <p>1. <u>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u></p> <p>2. (생략)</p> <p>3. <u>기타</u> <u>잡수입</u> 등</p>	<p>제2조(기금의 조성) <u>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u>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p>1. 「<u>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u>」(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u>적립금</u></p> <p>2. (현행과 같음)</p> <p>3. <u>그 밖의</u> -----</p>
<p>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u>군수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u>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u>은 가급적</u></p>	<p>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u>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u>----- ----- ----- 「<u>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u>」----- ----- <u>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이상</u> -----</p>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사용 기금액” 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평창군의 지정금고(지방재정법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라 함은 예산회계법시행령제135조 및 은행법제5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5조(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당해연도 사용
기금액-----

-----.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
-----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

-----. 다만, 금융기관이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과 「은행법」 제5조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

제5조(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
제6조에 따른 -----

②당해년도 사용기금액-----
----- 기금결산 후 -----

-----.

제6조(기금의 추가적립) 제3조에 의
한 당해연도 기금사용 후 익년도
법정적립 이전에 추가 사용 요인
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경정
예산 편성시 이를 우선 확보토록
하며, 불가피할 경우에 한하여 익
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추가 확보
토록 한다.

제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
조제2항, 영 제74조제1항 및 재난
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2.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
보
3.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4. 재난관련 장비, 물자 구입
5. 기타 군수가 재난의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제8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용자 등) ①군수는 영 제
74조제1항제6호의규정에 의하여

제6조(기금의 추가적립) ----- 따
라 ----- 다음 연

-- 다음 연-----
-----.

제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
조제2항, 영 제74조 각 호에서 규
정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제8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용자 등) ①----- 영 제
74조제1호마목에 따라 -----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
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
원한다.

②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
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
택 임차비용 용자규모는 총 소요
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용자한도
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용자기
금 규모와 용자신청자의 수를 감
안하여 결정한다.

③그밖에 기금의 용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의회계관리) ① (생략)

②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에 대하여는 평창군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
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 한
다.

1.·2. (생략)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
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

-----.

②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 70퍼센트 -----
---- 3천만원 이하-----

-----.

③그 밖에 -----
-----.

제9조(기금의 회계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사항
은 「평창군 재무회계 규칙」-----
-----.

제10조(회계공무원) ①-----
----- 각
호-----
--.

1.·2.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

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 (생략)

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군수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략)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 장
부를 -----

-.

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연도-----

----- 연 2회 -----

③-----

----- 과반수-----

제16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

----- 출납폐쇄 후 80일 이
내-----

②----- 각
호-----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의 -----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
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
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평창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

-----.

관 계 법 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적조(赤潮),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다.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제40조(대피명령) ①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①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응급조치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위험구역에서의 퇴거 또는 대피

②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제1항에 따라 위험구역을 설정할 때에는 그 구역의 범위와 제1항제1호에 따라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행위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2조(강제대피조치)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40조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 또는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나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급하다고 판단되면 그 지역 또는 위험구역 안의 주민이나 그 안에 있는 사람을 강제로 대피시키거나 퇴거시킬 수 있다.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68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①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3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재난과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보강

다.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라.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마.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용자

바.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2. 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제75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은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제74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자연재해저감시설)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관 자연재해저감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4.3 제20763호(「하천법 시행령」), 2009.12.14 제21882호(항만법 시행령), 2009.12.15 제21887호(농어촌정비법 시행령)]

1.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호안·보 및 수문
2.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댐·하구둑·제방·호안·수

제·보·갑문·수문·수로터널·운하 및 관측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방재시설
4. 「하수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 중 하수관거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5.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洑), 용수로, 배수로, 유지(溜池), 방조제 및 제방
6.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방시설
7.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댐
8. 「도로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터널·교량 및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제설시설, 토사유출·낙석방지시설, 공동구, 지하도 및 육교
9. 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 예보·경보시설
10. 「항만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방파제·방사제·파제제 및 호안
11. 「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방파제·방사제·파제제
12.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